

# 유한산업(주) 하도급거래

##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실천사항

1. 설치 목적  
하도급법 위반 사전 예방,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, 협력사 권익 보호 및 분쟁 방지

2. 위원회 구성  
※ 위원회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 이해관계자 중심 구성 권장

| 항목           |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성 인원        | 3인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위원장          | 공정거래 담당 임원                       |
| 위원 구성        | 구매/계약, 품질, 기술, 법무 등<br>관련 부서 책임자 |
| 외부 전문가(선택사항) | 공정거래 전문가 또는 변호사 참여 가능            |

3. 심의 대상  
내부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.

- ① 정당한 사유 없는 납품단가 감액
- ② 기술자료 요구 또는 사용
- ③ 일방적 계약 해지, 납품중단 등 불이익 조치
- ④ 신규 수급사업자의 부당한 배제
- ⑤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

4. 운영 절차

| 단계         | 설명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안건 상정      | 구매팀 또는 관련부서가 심의 요청서 제출  |
| 자료 검토      | 계약서, 협의서, 기술자료 요청서 등 첨부 |
| 회의 개최      | 위원장이 회의 소집 및 주재         |
| 심의 및 의결    | 관련 부서 의견 청취 후 다수결로 결정   |
| 결과 통보 및 이행 | 심의 결과를 관련 부서에 전달, 즉시 이행 |
| 기록 보존      | 회의록, 결과문서 등은 3년 이상 보관   |

5. 운영 관리 및 실천사항

①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

구성, 권한, 절차 등을 명시한 사규 또는 내규 형태

② 정기 및 수시회의 병행 운영

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권장, 중요 사안은 수시 회의로 대응

③ 심의결과 이행 점검

심의결과 반영 여부 사후 확인, 이행 미흡 시 책임자 보고

④ 교육 및 내부 홍보 실시

전사적 공정거래 교육 시 내부 심의제도 포함, 구매부서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교육 필수

6. 유의사항 및 권장사항

| 항목       | 설명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계약 해지 전  | 반드시 사전 심의 필요         |
| 기술자료 요청  | 서명 동의 및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  |
| 가격 감액    | 원가 인상등 정당 사유 여부 확인   |
| 책임 회피 방지 | 형식적 심의 금지, 실질적 검토 필수 |
| 외부감사 대응  | 회의록, 심의자료 체계적 관리 필요  |